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16
----------	------

2026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윤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며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매년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

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본 조례안은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환류하도록 규정함.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고자 함.
-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함.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지침서 작성 (안 제3조 ~ 제4조)

다.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안 제5조)

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제8조)

마.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제9조 ~ 제14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운영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16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할 것을 약속함.
- 이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고, 이 협정으로 인해 그동안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목표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함<sup>1)</sup>.
-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1) 외교부 기후변화협상([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 S)2)’ 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3)’ 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4)

- 그리고 이후 2021년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3.25.],[법률 제18469호, 2021.9.24., 제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 이 제정되었고,

동 법 제24조5)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음.

- 이에 국가재정의 경우 2021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동 법 제27조6) 및 제68조의37)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 대한민국정부(2020.12.).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3) 대한민국정부(2020.1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 환경부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3.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4.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 유희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법 제57조의2<sup>8)</sup> 및 제73조의3<sup>9)</sup>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반이 조성됨.

- 반면 지방재정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상황임.<sup>10)</sup>
-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sup>11)</sup>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sup>12)</sup>.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국가재정법」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9) 「국가재정법」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10) [21114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1.7.12., 제안, 2024.5.29., 임기만료폐기)  
[21116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2021.7.21., 제안, 2024.5.29., 임기만료폐기)  
[212486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2023.9.27., 제안, 2024.5.29., 임기만료폐기)  
[212487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3인, 2023.9.27., 제안, 2024.5.29., 임기만료폐기) 등
-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서울시 및 충청남도교육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예산제’로 명칭하여 조례를 제정함.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지역명	법령명	제정·개정 구분	시행일자	
광역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경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5. 10.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5. 7.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6. 2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5. 8. 11.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 12. 30.

-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 흐름과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근거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 기후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사업의 기후 영향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조치라 생각됨.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는 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안 제5조는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는 위원회 운영, 안 제9조는 교육, 안 제10조는 주민 참여 및 지원,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공개 및 홍보 등,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 2) 제명에 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sup>13)</sup>에 근거하고 있고 동 법에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명칭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제명 등에서 ‘기후예산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은 관련 예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sup>14)</sup>로 명칭하고 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제외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
- 반면 동 조례안과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두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용어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대신 ‘기후예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sup>15)</sup>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서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따른 것인바, ‘기후예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정에 있어 법률 위반사항은 아님.

다만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용어가 상위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경우, 동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후예산제’라는 용어는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금번 조례안의 용어를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기후예산제’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중립기본법」

14) 「국가재정법」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라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사항 및 「지방재정법」 등 입  
법 가능성, 그리고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sup>16)</sup>.

### 3) 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기후예산제 이해 증진을 위해 기후예산서·기  
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하  
며(안 제1항),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 안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규정하(안 제2항)고 있음.

○ 먼저 기후예산제의 취지는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  
해서는 기후예산제 분류체계 마련, 사업유형별 감축 방안, 감축량 산  
정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정교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2제2항<sup>17)</sup>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인  
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온실

16) 동 검토보고서에는 동 조례안에 따라 ‘기후예산제’라는 용어를 사용함.

17)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예산서 작성 방식,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23 회계연도부터 자체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기후예산제의 목적을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서울시 기후예산서 사업 대상 선정,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 분류, 작성자료 및 작성 단위, 작성 항목,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음<sup>18)</sup>.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이 동 조례안을 기반으로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기후예산제 사업분류 체계, 사업 대상 선정,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방식,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 방식 등이 우선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안 제4조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후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입법 조치라 사료됨.

#### 4)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1항),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후예산제의 개

18)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2025.7.).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요, 기후예산의 규모,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항).

- 또한 기후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후예산의 집행실적,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3항), 교육감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항).
- 기후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므로<sup>19)</sup> 기후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후예산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이루어져야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27조<sup>20)</sup>에 따라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이 포함되고 있음.
- 아울러 예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sup>21)</sup>에 규정되어 있는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19) 국회예산처(2025.10.).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7조의2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하며,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22)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가 규정 되어야하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의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서울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기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sup>23)</sup>.

[표-2] 광역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지역명	법령명	제정·개정 구분	시행일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경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5. 10.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5. 7. 1.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서울특별시는 ‘기후예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에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시행 2025.12.30.][충청남도조례 제6059호, 2025. 12. 30., 제정]를 제정하였음.

지역명	법령명	제정·개정 구분	시행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6. 2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1.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5. 8. 11.

- 이와 같이 안 제5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sup>24)</sup>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됨.

#### 5)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안 제1호)’, ‘안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안 제2호)’,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안 제3호)’,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안 제4호)’,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안 제5호)’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sup>25)</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8조 각 호<sup>26)</sup>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분류, 대상사업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의 정확성 및 객관성 보장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분과 위원회에서 기후예산제 운영 관련 자문을 받고 있음.<sup>27)</sup>

○ 이처럼 기후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판단, 사업의 기후 관련성 평가, 예산사업의 분류 및 관리 기준 설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예산제에 대한 분류 기준, 적용범위,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이 공통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동 조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과

25)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7)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2025.7.).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안 제6조는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예산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안 제6조제4호에서 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을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는 ‘온실가스감축 예산’ 대신 ‘기후예산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조례명에서 ‘기후예산제’ 를 사용할 경우 안 제6조제4호에서도 ‘온실가스감축 예산’ 을 ‘기후예산’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6) 부칙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안 제5조에 따른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는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기후예산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20년 9월에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을 시행하고, 2021년 7월에 3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시범사업’ 을 실시함. 이후 2022년 7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세부사업 209개)에 대해 ‘2023회계연도 기후예산제’ 를 시행하였음.
  - 이후 2024 회계연도부터는 10억원 이상 세부사업(250개)으로 기후예산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의 경우 기후예산제 도입 이후 실제 예산서를 작성까지

는(시범사업) 최소 2년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실제로 예산서 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후예산제 분류체계 마련, 대상 사업 선정, 사업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감축량 산정 등의 기준을 정책연구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바,

부칙에서 규정한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표준 분류체계, 측정방법론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해 부칙 안 제5조 시행 규정을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에서 ‘202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바 있음(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서울시교육청이 기후 예결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예산제 분류체계 마련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안 부칙 중 ‘2027년도’를 ‘2028년도’로 수정함(안 부칙).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16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시교육청이 실제로 기후 예·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후예산제 분류체계 마련, 대상 사업 선정, 사업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감축량 산정 등의 기준을 정책연구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바,

안 부칙에서 규정한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행 시기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행 시기를 ‘2027년도’ 에서 ‘2028년도’ 로 수정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7년도” 를 “2028년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u>2027년도</u>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 <u>2028년도</u> ----- ----- -----.</p>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 기대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

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제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집행 실적
2.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3.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결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총괄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중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연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침서, 추진사업 및 운영 성과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

다.

제12조(홍보 등)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한다.